

환경변화와 지적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

Changes in IPR Systems and Related Issues

김명순(M.S. Kim)

지적재산팀 행정원

윤형구(H.K. Yoon)

지적재산팀 선임행정원

본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 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

I. 서론

지난 20년간 지적재산권 제도는 과거 어느 기간에 비추어 유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매우 극심한 변화를 겪어 왔다. 각국 특허청, 학계, 그리고 기업영역 전반에 걸쳐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의가 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도 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지구적 환경변화는 한마디로 지적재산권 강화—“getting stronger”—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재권의 소유자(권리자)는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확장된 권리범위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II장에서는 이러한 급속한 지재권 위상변화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및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의 맥락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개별 사안에 대해 특허권 강화정책(pro-Patent)에 대한 찬반양

론의 관점에서 그 논쟁점을 정리하였다.

II. 과거 20년간의 주요 환경변화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을 기점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영역에 대한 권리입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TRIPs¹⁾ 협정 이후 진행된 지재권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 움직임에 발맞추어 각국에서는 지재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물질특허의 허용 확장 등)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특허는 이제 WTO 경쟁협상의 주요한 분야가 되었으며 과거 어느 국제협정에서도 보지 못했던 강화된 특허권제도로 그 방향이 수립되는 가

1)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한 규범 중 하나로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운데, 그 수용의 정도와 정책강도의 차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각 국가 영역 내에서 제정, 운영되는 지적재산법의 차이²⁾는 새로운 국제적인 긴장의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특히 몇몇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특허를 주는 심사기준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고, 물질특허, 소프트웨어특허, 유전자특허, 수학 및 생물학과 관련된 일부 기초과학에서의 특허인정 등이 그 변화의 실상을 반영한다.

한편, 혁신시스템에 있어 지적재산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여,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미국특허건수를 보면 1980년 62,000건, 1990년 90,000건에 이어 2001년에 166,000건에 이르며, 유럽특허청에 제출된 출원건수 역시 1980년 70,000건에서 2000년에는 129,000건에 이르는 획기적인 양적 증가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1]. 그리고 특허와 상표를 둘러싼 지적재산 분쟁(소송) 건수의 증가는 특히 미국의 경우 두드러지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많은 기술주도적 우량기업들이 해마다 라이선스권 허여를 통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각종 비즈니스 통계나 자료를 통해 나타난 사실은 기술과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장치가 오늘날 기업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재무적, 인적 자원을 지적재산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 활동의 범위가 급속히 확장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기술변화, 정부정책, 글로벌화의 세 가지 패턴으로 단순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변화의 새로운 패턴

EU 국가 및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적인 주요 OECD 국가들에게 있어 1990년대는 민간(기업) 연

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2]. 특히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요구가 증대되었다. 새로운 기술혁신 프로세스는 과거와 달리 혁신주체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collaboration)을 증가시켰고, 특히 기술적 복잡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이제 단일 혁신주체 혼자만으로는 필요한 과학기술의 축적과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편으로 인터넷의 보급으로 타인의 지식을 모방, 복제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해졌다. 따라서 이는 모든 혁신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혁신결과물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강화요구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고, 크고 작은 혁신의 결과물 및 모든 종류의 지식이 시장에서 용이하게 거래되는 기술시장의 확장 양상으로 이어져, 혁신주체는 가급적 출원의 형태로 모든 혁신적 지식을 권리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2. 정부정책의 변화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 OECD 국가는 1980년대 이후 광범위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과거 국가가 독점해오던 전기, 통신산업 분야에서조차, 이제는 벤처캐피탈 등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 신규진입자의 위협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 경쟁기업의 진입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항할 주요 보호수단으로 특허권의 확보와 강화에 주력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진행된 탈 냉전화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정부예산 축소는 공공연구소로 하여금 민간재원의 연구비 수주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연구부문에조차 재정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재산의 강화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3. 글로벌화

1990년대 이후 거듭되는 WTO 협정 등을 통해

2)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Business Model(BM)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국가간의 차이

진행된 전세계적 무역자유화 조치와 글로벌화의 진행은, 이제 일국에서의 특허출원 내용이 세계 어디에서나 즉시 액세스 가능한 환경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지재권의 가치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량의 출원을 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연히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상기에 언급한 지재권 활동의 확장에 따라 과학 기술의 거래시장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급기야 이제 지재권은 국가간 무역에 있어 주요한 품목이 되었고, 그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은 특정의 제한된 물품에 구현되어 거래되거나, 비시장적 이전형태(지식유출, 네트워크, 물물교환 등)를 통해서, 또는 어떤 지식의 경우는 아예 이동이 불가능했던 것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이제 지식은 시장거래의 메커니즘이 날로 다양화되는 가운데 그 거래형태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정부는 지재권의 강화정책(pro-IPR policy)을 구사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사적 이익과 맞물려 지지되어 왔다. 반면, 이러한 지식의 시장거래 메커니즘을 강력히 비판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pro-IPR”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지지론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허는 발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강화를 옹호하고 있고, 반대론은 “지식은 지식을 먹고 산다(Knowledge feeds knowledge.)”라는 지식의 그 본래적 메커니즘에 비추어 지재권 강화가 지식의 사회적 확산에 명백한 장애가 된다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는 또한 생명공학, 나노기술, 그리고 서비스발명(소프트웨어, BM 등)의 특허인정을 둘러싸고, 기존의 지재권 시스템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신기술분야에서 그 의견대립 양상은 첨예화되고 있다.

III. 주요 이슈들

이상에서 살펴본 지재권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양상을 기초로 지재권의 주요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그 논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3].

1. 특허: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인가, 지대(地代)³⁾의 원천인가?

특허권 부여에 관한 전통적 입장은, 지식은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제도를 통해 경쟁자의 무단 사용과 복제로부터 발명가를 보호함으로써 발명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돌려주기 위함으로 이해되었다. 최근 발명의 경제적 효과가 전반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또한 정보기술 발전으로 무단복제가 더욱 용이해지고 모방비용이 보다 저렴해짐으로 인해 발명가의 보호 요구가 증대되어 이러한 관점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발명 그 자체도 시장경쟁원리—영업비밀, 시장선점—에 맡긴다면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허권에 비해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논리적 근거로 특허권이 본래적으로 발명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지대를 사회로부터(특히 소비자로부터)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지재권 강화경향은 일반적으로 지재권자에게 보다 인산된 지대를 보장해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기술 분야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희생함으로써 연구개발예산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

발명이 특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특허제도가 지식의 확산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 인식이었다. 즉 특허제도의 핵심은 발명의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는, 발명자와 사회간의

3) rent

일종의 계약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이러한 공개를 통해 다른 발명가로 하여금 더 나은 개선(개량발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충분한 정보의 공개는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듯 비밀을 공개하고 특허출원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면 지식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특허로 공개되지 않은 지식이라고 해서 항상 비밀로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며, 또한 특허로 공개된 기술내용이라고 해서 실지로 더 확산이 잘되는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발명은 단지 짧은 일정기간 동안만 확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역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자 공동체를 통한 직접적인 정보유통 등으로 중국에는 가치있는 기술은 다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특허권으로 보호된 기술은 단지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오히려 특허권자 그 자신이 정보와 지식확산의 장애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실례로 일부 나노기술과 생명공학기술에서 나타나는 “blocking patents”⁴⁾ 현상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3.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영향

지식의 모방과 복제의 역사는 오랜 일이지만 최근 수년간의 IT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정보의 복제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으며,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복제가 일상적으로 범람하게 되어, 일부 기술분야에서 특허 연구결과가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띄고 있는 유전학 및 지구물리학 분야에서는 신기술 연구의 동기를 송두리째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의 인식은 pro-Patent 관점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반대론에서는 그러한 과학기술정보에의 접근장벽은

인터넷기술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된 지식확산과 협력 연구의 가능성을 그 기초부터 파괴시키는 것으로서, 한편에서는 IT 기술이 정보유통의 비용을 낮추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적권 강화가 정보유통의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4. 기술거래시장의 확산

최근 특허권 판매, 특허권 라이선싱 계약, 노하우 이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거래의 꾸준한 증가, 특히 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거래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으로 보호된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pro-Patent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는 발명자가 항상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술거래 시장은 발명가와 실시기업(생산, 마케팅)간의 일종의 역할분담이 되어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혁신의 확산에 순기능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4]. 실제 최근 몇 년간 R&D와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생겨났으며, 더욱이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스스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으로 타 경쟁사에 자사의 기술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또 다른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고, 그 대표적 기업으로 IBM, Texas Instrument 같은 기업은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어 들고 있다. 반면 기술거래 시장이 모두의 기대대로 잘 기능하지 못할 때, 즉 예를 들어 단일의 발명에 여러 회사에서 출원된 다수의 특허가 연관되어 있거나, 일군의 보완적 발명으로 묶여 있을 경우, 한 가지 기술의 사용에 연루된 다수 특허권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오히려 “tragedy of anticommons”⁵⁾를 야기하여 극단적으로는 특정 기술분야에서 연구를 포기하게 되

4) 방어특허: 기술을 사용하거나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 경쟁자를 해당 기술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특허

5) 기술을 특허화 한다는 것은, 아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공공재 형태가 아니라, 특허 발명자에게 독점적인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반공동체적인 이념이 구현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일종의 사유제도가 만들어낸 비극. 특히 biomedical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연구보고 되고 있다.

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5. 소프트웨어특허, BM 특허

미국과 일본에서 소프트웨어와 BM은 이미 특허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럽은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에 있어 발명의 세부 내용이 기술적인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를 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내주고 있고, 이 경우 BM은 명확히 배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분야에서의 특허권 인정은 이들 기술로 인한 혁신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가능하며, 소프트웨어기술의 경우 IT 기술과 이를 응용한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 영역의 확산 덕분에 급속도로 일반화되고 있는 혁신적 기술로 인정되고 있어, 기존의 전통 제조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마치 200년 전에 기계기술이 신기술이었고, 100년 전에 화학과 전기가 새로운 기술이었듯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현재의 신기술인 것이다. 소프트웨어특허와 BM 특허의 반대론자들은 이들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BM 특허의 경우는 보호의 구체적인 법적 대상물이 결여되고, 또한 BM 기술 발명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저렴하므로 특허와 동일한 레벨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기술은 그 기술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작은 기술적 진보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루는, 즉 발명의 과정이 점진적이고 누적적인(incremental) 특징을 가지므로 개별 프로그램을 하나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의 기여도 평가와 그에 따른 이득의 분배 등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주체상호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야기시켜 전체 특허시스템에 혼란을 주며, 또한 협상에 성공하기까지에

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체되게 된다. 한편,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해 신속한 타이밍이야말로 기술적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기술확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소프트웨어특허 출원서를 보면, 소스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비공개된 상태로 프로그램의 일반원리와 알고리즘만을 명세서에 공개하고 있고, 단지 제한된 목적(주로 연구나 교육 목적)의 역엔지니어링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기술에 비해 정보공개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 점을 들어 소프트웨어특허가 기술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희박적이며, 또한 BM을 통한 기술확산 효과 역시, 이전에 영업비밀 형태로 개별기업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전수되던 기술이 특허로 허용됨으로 인해 다소 확산의 실효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BM 특허 인정 이전에 이미 기업 내에서는 직무순환 및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한 확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였던 점을 들어 BM 특허 인정으로 인한 기술확산 효과에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6. 공공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

오늘날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가급적 많은 특허를 출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제정된 Bayh-Dole Act⁶⁾는 이런 맥락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입법사례로 간주된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배경에는 공공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에게 보다 시장의 기술수요에 대응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실현된 이익

6) 미정부 예산으로 운영된 대학, 연구소 등의 소기업(small entity)에서 나온 특허의 소유권 인정. 이후 모든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일적 지적재산정책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학연협동연구를 활발히 장려하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을 인센티브로 직접적으로 수혜받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축소 등으로 날로 경직되어 가는 정부예산에의 의존성을 줄이고 민간연구예산 유치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지재권 소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공공기술의 시장거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5]. 이로써 공공연구는 큰 정책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 생명공학 기술분야에서 그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반대론의 입장은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특허확보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주요 경영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응용기술분야에만 연구과제가 집중되게 되어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고유 기능인 기초연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상용기술을 놓고 기업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 특허청을 필두로 각국의 특허청은 과학적 발명의 특허인정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6]. 과학적 발명은 전통적으로 산업에의 이용가능성의 제한성으로 인해 특허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특히 생명공학기술을 중심으로 유전자 염기서열(EST)과 같은 분야에서 다소 이러한 엄격성이 완화되고 있다. 특정 기술분야의 경우 과학과 기술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비록 발명 시에 그 정확한 응용영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명이 곧바로 응용으로 이어짐—이러한 분야에서 각국 특허청은 다소 넓은 권리범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응용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통해, 성공여부가 매우 불확실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연구과제를 기업과 대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촉진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의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기업의 투자열풍은 이러한 지재권정책의 탄력적 대응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기초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 허용에 관한 또 한 가지의 논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초연구분야에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학적 아이디어가 이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버린다는 점이며, 비록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일단 특허로 출원되었다

면, 향후 관련기업에서 그 아이디어를 실용화하기 위한 추가적 개발 및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효과가 있다. 즉, 만약 기초과학적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모방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커지고 기술투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개발 노력은 더욱 지연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지난 수세기에 걸친 과학적 발명의 성공 역사를 보면, 과학이 공지기술(public domain)로서 일반에 무료로 개방되어 자유로이 이용가능 하였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확대 일변도의 정책은 과학기술의 존립근거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특허화된 과학적 지식에의 접근은 이전과 달리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며, 또한 그 접근에의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특허로 인한 과학기술 발전의 저해는 동식물 유전자특허의 전형적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갈수록 많은 발명이 특허화됨으로 인해 그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사용료 및 로열티) 양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수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면제책이 대다수 국가에서 법률로 명시되고 있으나, 실제 “연구목적”과 “상용화 목적”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기술분야에서는 그러한 면책조항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될 것인가가 의문으로 남는다.

7. 공지기술

최근 몇 년간 일반적으로 특허의 취득은 이전보다 훨씬 쉬워지는 경향이며, 특히 BM 특허와 같은 일부 기술분야의 경우, 이미 사용중인 기술에 대해 또는 기존기술에 대한 단순한 변경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어 이들 분야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도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이전에 유례없는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권리범위가 허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소송이 진행된 몇몇 특허의

경우에는 인터넷기술 전체에 대해, 그리고 기존의 전통민속에 대해 청구항이 작성된 예도 있다.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공지기술(state-of-the-art)과 특정분야에서의 공지기술은, 특히 현재 특허권이 허여되고 있는 신기술분야도 마찬가지로,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특허청 관계자 뿐 아니라 모든 이의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 각국의 특허청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어디까지 특허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 수립 및 국가간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적 소유권의 보호 강화라는 맥락과 동시에 공지기술의 보호와 강화 역시 정부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IV. 결론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확산이라는 두 가지 축은 특허제도의 제정과 시행이래 변함없는 정부의 역할이었으며, 그러한 목적 실현의 도구로서 잠재적으로는 매우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재권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각 국가는 운영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운영되어온 지재권 시스템은 그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협상시키는 매우 성공적인 제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새로운 환경변화 요인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 제기는 현행 지재권 시스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을 점검해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참고 문헌

- [1]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OECD, 2003.
- [2] Marieke Rensman and Gerald H. Kuper, "The Role of R&D and the Patent Activities in Economic Growth: Some Empirical Evidence," MERIT, Jan. 1999.
- [3]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ECD, 2003.
- [4] 한윤환, 기술경쟁과 특허보호 및 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정책논제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5] 최치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활용 현황과 과제," STEPI 과학기술정책지, Vol. 12, No. 6, 2002.
- [6] 서환주, 미국의 특허제도 개혁을 둘러싼 최근 논의 동향, STEPI 과학기술정책지, Vol. 13, No. 2, 2003.